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 감염의 예방지침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평상시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전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감염의 정의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민감한 숙주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한다. 의료진이나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서 감염되기 쉬우므로 감염에 대한 예방 관리방법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감염 증상 및 징후

1) 국소적 증상 및 징후

- ① 코와 부비동 감염: 코 막힘, 콧물
- ② 피부 및 점막 감염: 국소적 발적, 국소적 열감, 감염 부위 통증, 기능상실, 국소적 종창
- ③ 요로 감염: 빈뇨, 소변 혼탁

2) 전신적 증상 및 징후

발열, 맥박과 호흡수 증가, 무기력, 권태, 림프절 비대와 압통

3. 감염 질환의 종류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8]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구분	법 정 감 염 병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 정*
특성	물/식품 매개, 유행 즉시 방역대책 (6종)	예방 접종 대상 (10종)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19종)	신규 발생, 해외 유입 가능 (20종)	기생충 감염 (6종)	유행 여부 조사·감시 (17종)*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아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A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 일본뇌염 • 수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쓰쯔기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매독 • 크로이츠펔트-야콥 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펔트-야콥 병 (vCJ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스트 • 황열 • Dengue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Novel influenza) • 야토병 • 규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아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중증호흡기증후군 (MERS) • Zika바이러스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형간염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침균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 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 속균종(CRE)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 주기	즉 시	즉 시	즉 시	즉 시	7일 이내	7일 이내

- ①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②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③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④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⑤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⑥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2) 감염 질환자 발견 시 대처법

- ① 시설에서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④ 기관 내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4. 감염 예방과 대책(내용수정)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감염병의 발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체가 존재하는 환경 및 병원소를 관리 제거하여 수급자가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급자 및 종사자 전원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입소 전 수급자에 대하여 감염병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 취약환경 및 병원소 관리를 통한 감염원 제거
- *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실시
- * 입소전 감염병 유무 확인

1) 예방 교육

- ① 수급자 및 종사자들이 건강생활 습관을 갖도록 평상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교육 시간외에도 유인물, 교육자료, 게시자료,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절히 교육한다.
- ③ 야외 활동과 단체 활동(프로그램) 등 장기요양기관의 행사별로 계절과 연관지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한다.

- 종사자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전교육

개인위생 준수 및 기침예절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바로 병원 진료(촉탁의 및 협약기관 활용)

부득이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기관내 근무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급자를 직접 접촉(1m 이내의 거리에서 대화 또는 그이상의 가까운 만남)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함

감염병 이환시 바로 간호사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격리조치

- 종사자의 수급자 관리 및 지도내용

계절별 감염병에 대한 감염경로 및 예방법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감염병 환자 파악 및 신고절차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생활지도

추가환자 발생에 대한 감시요령

기관내 방역관리

수급자의 종사자 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 기관 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감염병 관리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

외부인이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바로 간호사와 상담

2) 환경정비

오염처리 시스템을 준비함과 동시에 케어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일상적인 청소로 쓰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나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마루, 침대, 손잡이, 세면장 등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 기구를 다룰 때에도 청결하게 한다.

3) 손 씻기

(1) 목적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2)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 ①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먹여주기 전
- ② 식탁 차리기 전
- ③ 음식물을 조리하기 전
- ④ 기침, 재채기, 콧물 닦기 등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된 후
- 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 ⑥ 렌즈를 끼기 전
- ⑦ 눈에 보이게 손이 더러워졌을 때
- ⑧ 대상자와 접촉 후, 대상자의 옷을 만진 후

(3)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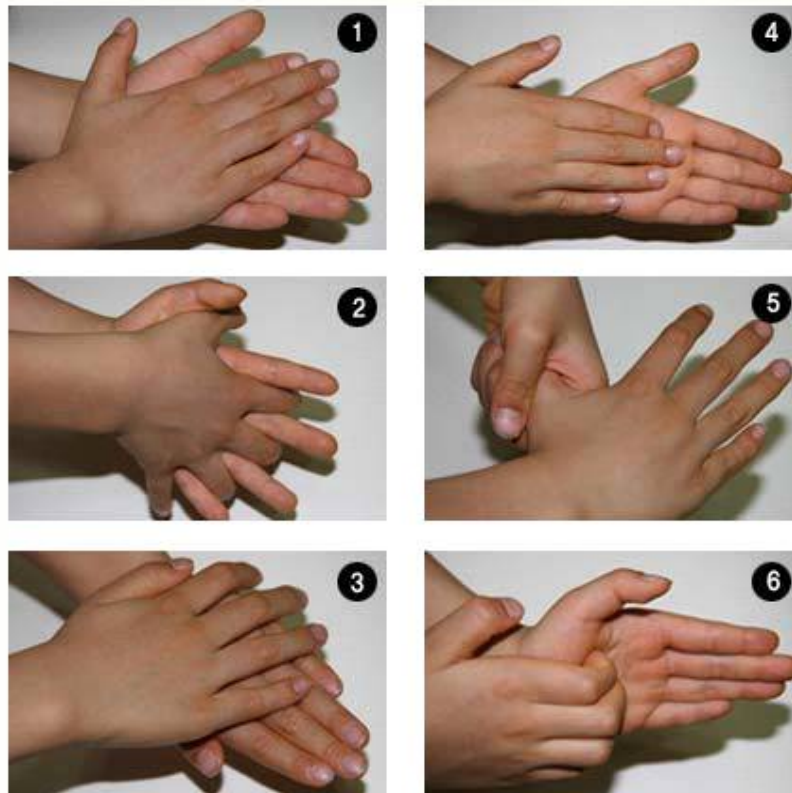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 ① 비누를 사용하기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충분히 적신다
- ② 충분한 시간 동안(30초이상) 비누와 함께 손을 비빈다(손을 씻는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 ③ 손을 씻을 때는 손목,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가락 사이 및 손톱 밑을 철저히 씻는다
- ④ 손을 씻은 후에는 일회용 수건으로 닦고 완전히 말린다

※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씻기

- ① 물과 비누의 사용이 어렵고 눈에 보일정도의 오염물이 묻어 있지 않으면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소독제의 알코올 농도가 60~90%일 때 최적의 살균력을 보인다
- ③ 한손바닥에 적정량(보통 1~3cc)의 손소독제를 던다
- ④ 손과 손가락표면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 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른다

(4) 방법



3) 소독(내용수정)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사람의 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문질러 닦는다.
-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를 하는 경우 최소 2~3시간 동안 계속 열어 놓아야 실내오염원의 99%를 제거 할 수 있다.
- 방역소독은 장기요양기관 자체소독, 방역 당국(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뢰, 소독대행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 비누, 알코올 함유 손세정제 및 핸드타월, 휴지, 소독제 등의 위생물품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사용하는 양을 연간 계획하여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기간별로 구입하도록 시설장은 관리한다.
- 위생관련 물품(비누, 손세정제, 손건조기)을 수급자 및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부족분을 관리하며 세면대 고장수리 및 청결지도를 하도록 시설장이 관리한다.
- 손을 대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가급적 대체 한다.
-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①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②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③ 희석하여 사용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④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⑤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⑥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4) 양치질

양치질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건강 관리면에서도 중요하다. 기침이 심한 대상자와 만날 경우에도 직접 코나 입을 통한 감염을 피하기 위해, 대상자의 정면이 아닌, 옆이나 뒤에 서도록 한다. 또 이런 대상자와 만난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하도록 한다.

5) 작업복, 마스크, 고무장갑의 사용

필요에 따라서 작업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사용하게 된다. 작업복과 마스크는 매일 바꾸고, 항상 청결한 것으로 사용한다. 대상자에게 직접 닿아서 처치한 경우에는 1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도 1회용이 좋다.

6) 오염된 물품의 처리 방법

일광 소독, 불탕 소독, 훈기 소독, 소독제 소독, 소각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II. 감염 예방 및 관리

1. 침상 및 화장실 관리

(1) 침상 관리

- ① 호흡기의 면역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의 경우는 실내 청소를 할 때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 ②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③ 대상자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습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정리 정돈한다.
- ④ 침상 생활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기 쉬워 오염될 기회가 많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⑤ 침상에서 식사를 할 때는 앞치마나 비닐, 타월 등을 깔아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 ⑥ 감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의류만이 아니라 침구도 감염경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⑦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3~4시간마다 창문이나 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 ⑧ 겨울에는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젖은 수건으로 습도를 조절한다.

(2) 화장실 관리

- ①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다.
- ② 바닥은 물때나 미생물의 발생이 쉽고 미끄러우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독 락스나 솔을 이용하여 문질러서 닦아준다.
- ③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으면 물때가 잘 빠진다.
- ④ 양변기나 세면대의 실리콘 띠에 생긴 검은 반점은 그 띠를 따라 화장실 휴지를 꽂아 엮고 그 위에 염소계 표백제(락스류)를 뿌리고 1~2시간 후에 물로 씻어 없앤다.
- ⑤ 배수구는 뚜껑을 들어내 오물을 걷어내고 뚜껑을 깨끗한 솔로 씻은 후 배수구 속까지 문질러 물때를 씻어낸 후 락스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 ⑥ 화장실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한다.

2. 쓰레기 및 쓰레기통 관리

1) 쓰레기 관리

- ①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 ③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 ④ **대상자**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
- ⑤ 사용한 물품들은 철저히 세탁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는다.
- ⑥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 ⑦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 ⑧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고 필요 시 소독한다.
- ⑨ **장갑을 사용하더라도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쓰레기통 관리

- ①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내고 잘 말리며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닦아낸다.

- ②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로 치운다.
- ③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는 매일 정리해야 세균과 악취를 막을 수 있다.

3. 음식물 위생관리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3대원칙은 청결, 조리음식의 신속섭취, 냉각 또는 가열처리 철저 등이다.

1) 음식물 조리

- ① 식품을 조리할 시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 이상에서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 ② 조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을 철저히 구분하여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 ③ 조리 시 75℃ 이상 도달 후 그 지점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며, 조리된 식품은 꼭 덮개를 씌워 2차 오염을 방지한다. 급식물품의 전날 조리는 가능한 제한하며, 매 조리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밥, 반찬류, 국 등을 보존식(5℃ 이하 상태로 72시간, 전용용기 사용, 100g 정도, 전용냉장고에 3일간)으로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2)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 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 ②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60℃ 이상이나 10℃ 이하에서 저장한다.
- ③ 냉장온도는 10℃ 이하 냉동온도는 -18℃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 ④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음용수 관리

- ① 음용수는 반드시 끓인 물을 제공하며, 보온병과 물컵에 대해 철저히 위생관리해야 한다.
- ②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수기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노인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4.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1) 그릇 및 식기류 관리

- ① 물에 불린 다음 수세미나 스펀지 등에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여 닦는다.
- ② 세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행군다.
- ③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쌓아 놓고, 물기가 마른 후 정리한다.

- ④ 모든 식기류는 바닥에 놔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⑤ 유리류의 그릇은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그릇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⑥ 식기는 세척하여 건조한다. 매번 소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습도가 높은 기간이나 감염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독한다.

2) 플라스틱 용기관리

- ① 음식이 뜨거울 때 담지 않는다.
- ② 밀폐용기 관리: 밀폐용기에서 냄새가 나면 사용한 녹차티백을 2~3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룻밤 정도 두면 냄새와 끈적임이 없어진다.

3) 칼, 도마 관리

- ① 칼과 도마는 고기, 생선, 빵, 채소, 과일 칼 등 조리에 맞는 것을 구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② 칼은 사용한 후 깨끗이 씻고 마른 행주로 닦아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③ 도마 사용 시 건조된 도마에 재료를 놓고 썰면 재료의 냄새나 색깔이 도마에 얼룩지고 잘 씻어지지 않으므로 사용 전 물에 씻은 다음 깨끗한 행주로 닦아서 사용한다.
- ④ 도마를 사용한 후 세제를 묻혀 충분히 씻고 찬물로 행구어 햇볕에 건조시킨다.
- ⑤ 도마와 칼은 육류, 생선, 생야채, 익힌 야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료에 있는 병원균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 바로 먹을 것과 사용 후 익힐 것으로 나눠 구분한다. 색깔로 구분하면 편리하다.
- ⑥ 도마와 칼은 사용 후 세제와 물로 세척, 건조하며, 가능한 매번 소독한다.

4) 개수대 관리

- ① 조리가 끝나면 찌꺼기 거름망을 반드시 비운다.
- ② 주방용 세정제를 이용해서 솔로 닦아 낸 후 물과 식초를 섞은 후 배수구에 부으면 악취가 사라진다.

5) 냉장고 관리

- ① 야채박스나 선반 등을 꺼내어 주방용 세정제로 닦고, 소다나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닦아 준다.
- ② 도어패킹은 헨 칫솔에 세제를 묻혀 꼼꼼히 닦고,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닦아낸 후 끝으로 알코올을 솜에 묻혀 닦아준다.
- ③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더러움과 악취가 없어진다.
- ④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항상 내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⑤ 숯이나 탄 빵조각은 좋은 탈취제로 냉장고 한 편에 놓아두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 ⑥ 음식이나 식재료는 비닐에 씌우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한다.
- ⑦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는다.(뜨거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온도를 상승시켜 나머지 음식을 상하게 한다.)
- ⑧ 냉동 음식을 해동하는 동안 세균 증식이 급격히 발생하므로 냉장고에서 해동하고 다시 냉동하지 않도록 한다.
- ⑨ 냉장고 내에서도 세균이 증식하므로 섭취 전 세척하거나 씻도록 한다.
- ⑩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유통기간을 반드시 준수한다.
- ⑪ 냉장고 온도는 1~4도를 유지한다.
- ⑫ 너무 많은 음식을 냉장, 냉동고에 보관하면 냉각공기 순환에 방해가 되어 음식이 상하므로 공기가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보관한다.

6) 수세미와 행주관리

- ① 수세미와 행주는 자주 삶은 것이 가장 위생적이다.
- ② 삶을 수 없는 스펀지 등은 표백제를 희석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꼭 짜서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깥 말려서 둔다.
- ③ 행주는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7) 고무장갑 관리

- ①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 ② 사용 후 안팎을 뒤집어 깨끗이 세제로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어서 건조시킨다.
- ③ 습기 찬 장갑을 끼면 습진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5. 유치 도뇨관 관리

- ①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아랫배(방광위치) 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 ② 소변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 ③ 소변의 색깔이 변하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의료진(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알린다.
- ④ 소변줄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 ⑤ 소변줄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한다.
- ⑥ 소변줄 삽입부(회음부)는 하루 한번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준다.
- ⑦ 회음부위는 앞에서 뒤(항문방향)로 닦는다.
- ⑧ 소변줄이 막히거나 썬 경우, 오염이 심할 경우는 교체한다.(의료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알린다.)

6. 수급자의 피부 관리 및 상처관리

1) 피부관리

- ①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히 유지한다.
- ② 찰과상이 있을 경우 감염되기 쉬우므로 찰과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이나 목욕 등의 활동시 반지와 같은 보석류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톱을 짧고 둥글게 깎는다.
- ③ 욕창 예방을 위하여 시트는 주름 없이 잘 펴고, 주기적(2시간 마다)으로 자세를 변경한다.

2) 상처(주사부위, 욕창, 수술부위, 배액관 삽입부위) 관리

- ① 의료진(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지시에 따라 드레싱을 교환한다. 그러나 젖거나 더러워진 경우는 바로 교환한다.
- ② 드레싱을 하기 전 손 씻기를 하고 장갑을 착용하며, 드레싱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 ③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 ④ 소독은 피부 소독제를 사용한다.
 - ▶포비돈 요오드
 - ▶알코올은 상처가 있는 곳에는 자극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의료진(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알린다.
 - ▶피부가 빨갛게 되며, 부종이 있는 경우
 - ▶고름이 나오는 경우

7. 경구영양 공급관리 및 약품관리

1) 경구영양 공급관리

- ① 음식 준비 전과 음식을 주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 ② 대상자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대상자의 손을 씻긴다.
- ③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여 기도로 음식이 넘어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 후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후 30분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한다.
- ④ 식사 후 대상자 및 **종사자**는 손을 씻도록 한다.
- ⑤ 매 식사 후 칫솔질을 한다.

2) 약품관리

- 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② 캡슐에 들어 있는 약은 미리 까놓지 않고 복용 직전에 까서 복용한다.
- ③ 시럽의 경우 계량컵에 약을 덜어서 복용시키고,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④ 꺼낸 시럽은 다시 용기에 넣지 않는다.

- ⑤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은 복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 ⑥ 장기간 사용하는 약은 개봉 일을 기록한다.
- ⑦ 개봉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색깔, 냄새 등이 변질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 ⑧ 약품 전용용기에 보관한다. (다른 약과의 오남용 방지)
- ⑨ 안약, 귀약 등은 약 나오는 부분을 알코올로 잘 닦아 상온,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면봉에 묻혀 사용한다.

8.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와 분비물 처리(내용수정)

1) 세탁물 관리

- ① 오염세탁물 : 법정감염병 **어르신이** 사용한 세탁물,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및 **어르신의**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은 별도의 방수용기에 분리하여 세탁한다.
- ② 오염세탁물 중 **락스, 삶기 등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솜이불 등은 일광소독을 충분히 시행한다.**
- ③ 세탁물의 상태를 관찰하여 **어르신이** 실금, 하혈 등 건강이상인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한다.
- ④ 세탁방법은 대상자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여 선택한다.
- ⑤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림세탁이나 부분세탁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시간이 길다고 때가 잘 빠지는 것은 아니다.

2) 폐기물 관리

- ① 수급자에게 사용된 물품, 분비물이 묻은 물품은 방수비닐로 1차 포장하여 10배 희석한 락스를 뿌린 후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 ②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규정(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 등)에 따라 처리한다.

3) 기타 분비물 처리

- ①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에게서 나오는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 ③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 시 소독한다.

9. 노인시설에서의 감염 예방과 위생관리

감염예방은 일상생활 중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이다. 게다가 이용자

자신이 저항력이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영양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감염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생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청결유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이용자가 “옴” 이나 MRSA 보균자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시설이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손 씻기

- ①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② 대상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대상자라도 다른 부위를 처치할 때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③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장갑 착용

- ①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②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③ 장갑 착용이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 ④ 일회용 비닐장갑은 재사용 하지 않는다.
- ⑤ 장갑이 찢어진 경우 바로 교환한다.
- ⑥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는다.

3) 가운,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보호대 착용

- ① 공기나 호흡기 분비물(가래, 콧물)로 전염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② 마스크를 벗을 때는 마스크 앞을 만지지 않고 끈을 풀어 끈을 잡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 ③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 ④ 피부나 옷 등이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가운을 착용한다.
- ⑤ 가운이 오염되면 바로 벗고 손 씻기를 한다.
- ⑥ 가운이 찢어지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교환한다.
- ⑦ 일회용 비닐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4) 처치기구 처리

- ①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낸다.
- ②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③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 ④ 날카로운 물품은 천공이 안 되는 용기에 버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⑤ 날카로운 기구에 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노인시설의 위생관리>

- 시설식기 등 설비, 음료수의 위생적인 관리와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 쥐나 곤충의 구제방법 및 영양 개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의 지도조언을 구함과 동시에 긴밀한 연계 관계를 유지한다.
- 의약품, 의료기구를 적정 관리한다.
- 의약품 관리문제는 시설의 실정에 따르고, 지역 약국 약제사의 협력을 얻는다.
- 쾌적한 요양환경은 시설내의 온도, 습도, 채광이 적절해야 하고, 환기에 주의 하며 악취나 이상한 냄새가 나지 말아야 한다. 화장실의 설치형태, 쓰레기 처리장 위치, 배수구의 위치, 환기구의 위치와 크기, 주방설비와 위치, 청소도구의 설비와 수납위치 등에 이르기 까지 설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동시에 공기정화설비들의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 시설내부 청소를 철저히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감염증에 대한 지식과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입소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연수회를 실시하다. 감염방지수칙을 작성할 때는 의료기관 등에서 참고 문헌을 입수하여 참고한다.
- 이용자(입소자)나 직원은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그러기 위하여 세면대 등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 혈액이나 오물의 취급에는 특별히 주의를 하고, 이들을 다룰 때에는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의료폐기물의 처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10. 감염관리의 기록과 조치

수급자에게 입소 전 1개월 이내, 또는 입소시 감염관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침실 격리, 병원 이송,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하며, 오염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부에 통하는 주출입구에는 손세정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손세정제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출입구에 세면대가 있으면 손세정제가 없어도 된다.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 포 등 소독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 의료 폐기물은 전용처리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1. 소독의 종류 및 실시방법(내용수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 제36조3항, 제40조1항)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11.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감염병 유행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감염병 발생	환자 증상사정, 특별침실 격리,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